제70조(학위수여 시기, 양식)에 의거하여 별지 개정	
현 행	개 정
석 제 호 학위기 성 명 년 월 일생	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
위 사람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○○석사()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	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부(학과)( 전공) 석 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 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<u>이 이학 석사(영문학위명)</u>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
논문제목 : 년 월 일	· 논문제목 : 년 월 일
대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ㅇ ㅇ ㅇ (인) 위의 인정에 의하여 ○○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.	대신대학교 대학원장 (학위명) ㅇ ㅇ ㅇ (인)
년 월 일	위의 인정에 의하여 ○○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.
대신대학교 총 장 학위 ㅇ ㅇ ㅇ (인)	대신대학교 총 장 (학위명) ㅇ ㅇ ㅇ (인)
학위등록번호	학위등록번호
박 제 호 학위기 성 명 년 월 일생	박 제 호 학위기 성 명 년 월 일생
위 사람은 본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○○박사()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	위 사람은 <i>본 대학교 대학원 학부(학과)( 전공) 박 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</i>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<i>OO학 박사(영문학위명)</i>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
논문제목 : 년 월 일	논문제목 :
대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ㅇ ㅇ ㅇ (인)	년 월 일
위의 인정에 의하여 🔾 🔿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.	대신대학교 대학원장 (학위명) ㅇ ㅇ ㅇ (인)
년 월 일	위의 인정에 의하여 ○○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. 대신대학교 총 장 (학위명) ㅇ ㅇ ㅇ (인)
대신대학교 총 장 학위 ㅇ ㅇ ㅇ (인)	학위등록번호
학위등록번호	7 110 7 1: \$
제2조 (학과별 전공) ①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학과 및 전공을 둔다. 1. 신학과(신학석사학위 Th.M.) : 구약신학. 신약신학. 교의신학. 역사신학. 실천신학. 선교신학(개정 2013.3.1.)	제2조 (학과별 전공) ①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학과 및 전공을 둔다. 1. 신학과(신학석사학위 Th.M.) : 구약신학. 신약신학. 조직신학. 역사신학. 실천신학.
(중략)	(중략)
②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학과 및 전공을 둔다.(신설 2010. 9. 1.) 1. 신학과(철학박사학위 Ph.D.) : 구약신학, 신약신학, 역사신학, 교의신학, 실천신학	②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학과 및 전공을 둔다. 1. 신학과(철학박사학위 Ph.D.): 구약신학, 신약신학, 역사신학, <u>조직</u> 신학, 실천신학

제21조2(재이수) 신설	제21조2(재이수) ① C+이하과목은 재이수를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 ② 재이수 학점은 기 취득한 성적과 재이수 성적 중 높은 성적을 인정하여 성적표 에 기재하고 평균평점 계산에 반영한다.
	부칙 1.(시행일) 본 개정 학칙 시행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